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0일 전(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긴급)”을 “15일 전(긴급)”으로 한다.

별표 1의3에 허가 사용자의 가)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중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1), 2),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판독취급관리자: 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1명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2)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물리학, 화학공학, 화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

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판독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물리학, 화학공학, 화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나. 판독업무종사자: 개인선량계의 취급 종류별로 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2명 이상

1)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화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② (생략) ③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u>30일 전(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u>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략) ④ (생략) [별표 1의3]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15일 전(긴급</u>-----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의3]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 (제68조의4제2항 관련) <table> <tr> <th>구분</th><th>기준</th></tr> <tr> <td>허가 사용자</td><td> 1. ~ 2. (생략) 3. 이동사용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u><신설></u> </td></tr> </table>	구분	기준	허가 사용자	1. ~ 2. (생략) 3. 이동사용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u><신설></u>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 (제68조의4제2항 관련) <table> <tr> <th>구분</th><th>기준</th></tr> <tr> <td>허가 사용자</td><td> 1. ~ 2. (현행과 같음) 3. 이동사용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u>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u> </td></tr> </table>	구분	기준	허가 사용자	1. ~ 2. (현행과 같음) 3. 이동사용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u>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u>
구분	기준								
허가 사용자	1. ~ 2. (생략) 3. 이동사용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u><신설></u>								
구분	기준								
허가 사용자	1. ~ 2. (현행과 같음) 3. 이동사용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u>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u>								

	나) (생략)	
신고사용자 (생략)		

[별표 2] 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13조제1항관련)

구분	기 준
1. 기술인력	가. <u>판독취급관리자: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1명</u> 1) < 신 설 > 2) < 신 설 > 3) < 신 설 > 나. 판독업무종사자: 개인선량계의 취급 종류별로 <u>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u>

	따른 <u>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u>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u>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중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 사람</u>으로서 지정일로부터 <u>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u> 나) (현행과 같음)
신고사용자 (현행과 같음)	

[별표 2] 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13조제1항관련)

구분	기 준
1. 기술인력	가. 판독취급관리자: <u>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1명</u> 1) <u>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u> 2) <u>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물리학, 화학공학, 화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u> 3) <u>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물리학, 화학공학, 화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u> 나. 판독업무종사자: 개인선량계의 취급 종류별로 <u>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갖</u>

	<u>서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화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 또는 판독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인 이상</u> <u>1) < 신 설 ></u> <u>2) < 신 설 ></u>
2 ~ 3. (생략)	(생략)

	<u>준 자 2명 이상</u> <u>1)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화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u> <u>2) 판독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u>
2 ~ 3. (생략)	(생략)